

시세정보 이용 관련 유의사항

[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, '13.10.31(목)]

□ 일부 회원만이 이용 가능한 무선전송방식(microwave망)을 허용할 경우,

-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부산에 설치하고 시세를 무선전송방식에 의하여 수신하는 일부 회원이 타회원에 비하여 거래 환경에 있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
- 일부 회원의 독과점 및 정보 분배의 불평등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도 저하가 예상됩니다.
- 무선전송방식에 의하여 시세 정보를 제공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자본시장법 >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·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7조(신의성실의무 등)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.

□ 또한, 회원은 모든 투자자에 대한 고지 없이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 방식으로 시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< 금융투자업규정 >

제2-26조(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)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7.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,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, 설비,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

<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>

제1-4조(차별적 자료·설비·서비스 제공 금지) ① 규정 제2-26조제1항제7호에서 “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, 설비,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
- 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-2와 같다.

별표 1-2. 차별적 자료·설비·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 (제1-4조 제2항 관련)

1. 차별적 자료 제공 관련 기준(제1-4조제1항제1호 관련)

가.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